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66
----------	-----

2020. 7. 21.(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6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7월 17일

-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가.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변경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명)
 - 점용기간 이 → 점용기간이(안 제3조제2항)
- 도로점용료 부과 면제 기준 변경 (안 제3조제4항)
 - 5천원 미만 → 1만원 미만
-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일 신설(안 제5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면제 금액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명 및 안 제3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변경함.
- 안 제5조제3항은 징수교부금을 6월 말, 12월 말 실적 기준으로 각각 교부하도록 교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5. 15.~`20. 6. 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면제 금액의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명 등 띄어쓰기 변경 및 징수교부금 교부 기준일 신설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점용기간 이”를 “점용기간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5천원”을 “1만원”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년 6월 말, 12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각 각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생략>

⑥ <생략>

<신설>

④ -----
1만원-----

⑤ <생략>

⑥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년 6월 말, 12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한다.

관련법령 발취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 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